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
2013년 5월 16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유통물류과 박영삼 과장(2110-5141), 박주현 사무관(2110-5293)

「유통산업발전법」 시행에 차질없어

- 7월 시행예정인 상권영향평가서·지역협력계획서 연구착수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윤상직)는 7월말부터 시행예정인 대형마트·SSM 신규출점시 "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*" 제출제도의 적기 시행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힘

* '13.1.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「유통산업발전법」은 대형마트·SSM 신규출점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함(7.24시행)

○ 또한 "0시부터 10시 이내 영업시간 제한" 및 "매월 이틀 공휴일 의무휴무" 등 강화된 영업규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지자체에 개정 유통법 관련 참고자료를 배포(4.25)함에 따라 이 달부터 지자체별로 조례 개정도 본격 추진 중임을 밝힘

○ 한편 4월말부터 발효된 개정 유통법과 시행규칙에 규정된 개설계획 예고제도 차질없이 시행중임

○ 유통법 개정 후속조치는 소상공인·자영업자 및 전통시장 활력회복을 위한 국정과제로, 산업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강화된 영업규제 등이 정착될 수 있도록 세부과제를 계속적으로 정상추진할 계획

□ **(상권영향평가 등)** 개정 유통법상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시 "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"를 제출하는 규정은 '13.7.24일부터 발효될 예정임

○ 산업부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제도의 적기시행을 위해 지난 달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, 업계간담회*(5.10)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조율중이라고 밝힘

* 참석 : 대한상의, 전문가, 체인스토어협회, 상인연합회, 체인사업협동조합 등

○ 의견조율을 통해 상권영향평가서 등의 세부내용이 확정되면, 5월중 유통법 시행령·시행규칙 2차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임

□ **(강화된 영업규제)** 한편, 산업부는 개정 유통법에 따른 강화된 영업규제* 등이 일선 지자체에서 혼선없이 정착·시행될 수 있도록 광역 및 기초지자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유통법 시행을 지원중임

* 영업시간제한 확대 : (현행) 0~8시 → (개정) 0~10시 이내
의무휴업일 확대 : (현행) 매월1~2일 → (개정) 매월 이틀 공휴일
단 이해당사자 합의를 거쳐 비공휴일을 의무휴무일로 지정가능

○ 지자체 요청에 따라 내부지침을 배포(4.25)함에 따라 광역 지자체별로 관할 기초 지자체 조례 개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(광주시 4.25, 경기도 5.1)하는 등 현재 지자체별 후속조치를 본격 추진 중임

○ 조례개정 및 처분절차(약 3개월 소요 예상)가 완료되는 올 하반기경에는 강화된 영업규제가 전국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됨

□ **(개설계획예고제)** 또한 4월말 시행된 개설계획예고제에 의해 대규모 점포 및 SSM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 시작 30일 전에 지자체 홈페이지에 개설계획*을 게재해야 함

* 개설자, 개설지역, 영업개시예정일, 대규모점포등의 종류, 매장면적(㎡) 포함

- 금번 조치로 인해 대규모점포 등의 신규출점에 대해 주변지역 상인들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생법상 사업조정의 실효성을 확보*할 수 있게 됨

* 「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중소기업자 단체 또는 해당지역내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1/3이상의 동의를 얻은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면, 조정권자(대규모점포: 중기청, SSM: 시도)는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할 수 있음

□ 산업부는 향후에도 광역-기초 지자체 업무연락망을 통해 협조체제를 강화·유지하여 지자체별 유통법 추진동향 및 특이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힘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박주현 사무관(☎ 02-2110-529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시행령·규칙 1차개정 주요내용(4.24시행)

1 3천만 → 1억원 상향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(시행령 별표4)

○ 점포당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을 달리 정함

전년도 점포당 매출액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
100억원 이상	3천만원	7천만원	1억원
100억원 미만	1천만원	3천만원	5천만원

* 점포당 연평균매출액('12년) : (대형마트) 741.5억원 (SSM) 62.3억원

2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(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)

*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 소속으로 설치

○ **(구성)** 부시장인 회장 1인, 대형유통 및 중소유통 대표 각 2인, 지자체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 위원*, 소속 지자체에서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등 총 9인 이내 ⇒ **이해당사자로 구성**

* 해당 지역 소비자단체 또는 주민단체 대표, 대중소 유통 협력업체·납품업체·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등

○ **(임기)**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특별한 사유* 발생시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해당 위원을 해촉 가능

* 금고 이상의 형 선고,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직무수행 곤란, 직무태만·품위손상 또는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
○ **(운영)**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조정 가능, 전체 2/3 참석시 개최하고 참석자 2/3 찬성으로 의결

○ **(기능)** 영업규제 시행(유통법 제12조의2),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(유통법 제13조의3), 대중소 유통기업간 상생협력촉진 등에 관한 의견제시

3 개설계획예고제 (시행규칙 제5조의2 신설)

○ **(방법)** 해당 지역의 기초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재

* (개설자) 기초 지자체에 게재 신청 → (지자체)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게재

* 법에 따라 영업개시전 예고기간이 30일 이상이 되도록 운영

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	개설계획 게재 신청	해당 지역 기초지자체
< 개설계획 > ① 개설자 (법인명칭, 대표자성명) ② 개설지역(주소) ③ 영업개시예정일 ④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⑤ 매장면적(㎡)	→	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설계획 게재

○ **(내용)** 개설자(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), 개설지역(주소), 영업개시 예정일, 대규모점포등의 종류, 매장면적(㎡)

붙임 2 지자체별 조례 개정 추진 현황 ('13.5.14일 현재)

☐ 4.24 발효된 유통법(시행령 · 규칙)이 반영된 조례 개정 현황

* 주내용 : 영업시간 확대(0시~익일 10시), 의무휴업일 확대: 매월 이틀 공휴일 영업시간 예외 농수산물 매출비중 55%로 상향 등

절 차	기초지자체	비 고
1 자치법규 입안	· 대전 5개구 (동구, 중구, 서구, 유성구, 대덕구) · 경기 안산(5.10) 수원(5.31) · 경남 창원·양산	· 제천시,진천군,단양군,부산 북구(5월중 추진) · 고성,남해,합천,진주, 하동(6월) · 사천,밀양,창녕,거창,충주, 청원,보은,옥천,영동,증평, 괴산,음성(7월이후예정)
2 사전승인·협의 또는 관계부서 협의	· 춘천시, 원주시, 대구광역시 동구	· 춘천시(5월말 입법예고) · 원주시(금주중 입법예고)
3 입법예고	· 울산 동구(5.15), 안양(5.7), 시흥(3.12), 아산(3.11), 통영(5월중)	
4 규제심사		
5 법무부서 심사		
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	· 경기 오산(5.24)	
7 조례안 공고 / 조례안 발의·제출	· 강원 동해시	· 동해시(7월 의회 의원 발의 추진)
8 조례안 예고 ('11.7.14 신설)		
9 지방의회 심의·의결	· 인천서구(4.26.) 제주도(5.16예정), 광주 서구(5.16 예정), 전북 남원시(4.24)	· 인천서구(5.16.) · 제주도(5.14 상임위 의결)
10 의결된 조례안 이송	· 울산 북구(5.6)	· 울산 5.24 공포(예정)
10-1 보고		
10-2 재의요구		
10-3 재의결		
10-4 대법원 제소		
11 공포	· 청주시(4.5.), 전북 남원시(5.10) 광주동구(3.19)·남구(4.30)·북구(3.25) 광산구(4.16), 경기 시흥(4.24)	